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투자신탁[주식]

변경후)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3) 펀드명 변경
4) 보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10월 2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조 (용어의 정의)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신설>	②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6. 모자형(자투자신탁)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내지 제4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7.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매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증권의 차입 11.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3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9.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삭제>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삭제>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제 25 조의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6 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 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 35 조(상환금등의 지급)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신설>	있다. ⑪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9 조(보수)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7.024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C1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15.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C2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13.75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C3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12.5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C4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11.25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5.42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종류 C1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12.5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종류 C2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11.25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종류 C3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10.0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종류 C4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8.75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종류 C5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10.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C-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 : 가. 2010 년 10 월 18 일부터 2011 년 10 월 17 일까지:연 1000 분의 12.7 나. 2011 년 10 일 18 일부터 2012 년 10 월 17 일까지:연 1000 분의 11.8 다. 2012 년 10 월 18 일부터 2013 년 10 월 17 일까지:연 1000 분의 10.9 라. 2013 년 10 월 18 일부터:연 1000 분의 10.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C-F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3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C-W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A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3.5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C5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7.5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종류 C-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가. 2010 년 10 월 18 일부터 2011 년 10 월 17 일까지:연 1000 분의 12.7 나. 2011 년 10 일 18 일부터 2012 년 10 월 17 일까지:연 1000 분의 11.8 다. 2012 년 10 월 18 일부터 2013 년 10 월 17 일까지:연 1000 분의 10.9 라. 2013 년 10 월 18 일부터:연 1000 분의 5.0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종류 C-F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3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종류 C-W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0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종류 A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3.5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종류 C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296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10.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8	[종류 CG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6.50 3.신탁업자보수율: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연 1000 분의 0.15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생략, 현행과 동일)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자투자신탁[주식]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투자전략]**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 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하나UBS대한민국1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

<table>
<tr>
<td></td>
<td>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 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td>
<td>
<table>
<tr><td></td><td>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td></tr>
</table>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td>
</tr>
<tr>
<td></td>
<td>분류
<추가></td>
<td>분류
모자형</td>
</tr>
<tr>
<td></td>
<td>
투자비용

(생략)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
<tr><td>(A)</td><td>납입금액의 1.0% 이내</td><td>1.5000</td><td>0.7024</td></tr>
<tr><td>(C1)</td><td>없음</td><td>2.2976</td><td>1.5000</td></tr>
<tr><td>(C-E)</td><td>없음</td><td>1.7976</td><td>1.0000</td></tr>
</table>
</td>
<td>
투자비용

(업데이트)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
<tr><td>(A)</td><td>납입금액의 1.0% 이내</td><td>1.287</td><td>0.542</td></tr>
<tr><td>(C1)</td><td>없음</td><td>1.995</td><td>1.250</td></tr>
<tr><td>(C-E)</td><td>없음</td><td>1.245</td><td>0.500</td></tr>
</table>
</td>
</tr>
<tr>
<td></td>
<td>운용전문인력
(생략)</td>
<td>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
</tr>
</table>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투자신탁[주식]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자투자신탁[주식]

<table>
<tr><td></td><td>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td><td>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 년 10 월 22 일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변경
- 펀드명 변경
- 보수 변경</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종류형

다. 모자형구조<신설></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증권(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종류형, 모자형(자투자신탁)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td></tr>
</table>

	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별첨 1 참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별첨 1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별첨 2 참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별첨 2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추가> 나. 환매 <추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

		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생략)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3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3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

	있습니다.	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별첨1]

<변경 전>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이나 주식·채권의 등에 연계된 것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

	지 투자가능	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제외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변경 후>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이상
유동성자산	10%이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능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라.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제외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의 금리스왑거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에 관한 투자한도 및 **나. 투자제한** 중 동일종목 투자,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및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투자설명서 별첨2]

<변경 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변경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이상
유동성 자산	10% 이하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관리 전략을 수행합니다.

다. 수익구조: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투자설명서 별첨3]

<변경 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7296	0.7024	0.0500	0.0180	**1.5000**	0.0021	**1.5021**	1.38	0.1399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296	1.5000	0.0500	0.0180	**2.2976**	0.0000	**2.2976**	1.59	0.1181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296	1.3750	0.0500	0.0180	**2.1726**	0.0000	**2.1726**	-	0.1340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296	1.2500	0.0500	0.0180	**2.0476**	0.0000	**2.0476**	-	0.1371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296	1.1250	0.0500	0.0180	**1.9226**	0.0000	**1.9226**	-	0.1259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296	1.0000	0.0500	0.0180	**1.7976**	0.0025	**1.8001**	-	0.1427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7296	1.0000	0.0500	0.0180	**1.7976**	0.0000	**1.7976**	1.21	0.1305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0.7296	0.0300	0.0500	0.0180	**0.8276**	실비	**0.8276**	-	실비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7296	0.0000	0.0500	0.0180	**0.7976**	실비	**0.7976**	-	실비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7296	0.3500	0.0500	0.0180	**1.1476**	실비	**1.1476**	-	실비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7296	1.0000	0.0500	0.0180	**1.7976**	실비	**1.7976**	-	실비
지급시기		6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경 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7000	0.5420	0.0300	0.0150	**1.2870**	0.0021	**1.2891**	1.38	0.1399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0	1.2500	0.0300	0.0150	**1.9950**	0.0000	**1.9950**	1.59	0.1181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0	1.1250	0.0300	0.0150	**1.8700**	0.0000	**1.8700**	-	0.1340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0	1.0000	0.0300	0.0150	**1.7450**	0.0000	**1.7450**	-	0.1371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0	0.8750	0.0300	0.0150	**1.6200**	0.0000	**1.6200**	-	0.1259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0	0.7500	0.0300	0.0150	**1.4950**	0.0025	**1.4975**	-	0.1427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7000	0.5000	0.0300	0.0150	**1.2450**	0.0000	**1.2450**	1.21	0.1305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0.7000	0.0300	0.0300	0.0150	**0.7750**	실비	**0.7750**	-	실비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7000	0.0000	0.0300	0.0150	**0.7450**	실비	**0.7450**	-	실비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7000	0.3500	0.0300	0.0150	**1.0950**	실비	**1.0950**	-	실비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0.7000	0.6500	0.0300	0.0150	**1.3950**	실비	**1.3950**	-	실비
지급시기		6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10월 2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현행과 동일) 4.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1.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2">요약정보</td><td>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td></tr>
</table></td><td>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
</table></td></tr>
<tr><td>투자비용</td><td>투자비용</td></tr>
</table>

	(생략)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책임 : 김정표 부책임 : (생략)	**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왕섭 부책임 :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td><td>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추가></td><td>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년 10월 22일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정표 → 이왕섭)</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 : 김정표
부책임 : (생략)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생략)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td></tr>
</table></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왕섭
부책임 : (업데이트)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업데이트)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모투자신탁명</th><th>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td></tr>
</table></td></tr>
</table>

<table>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내역</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이상</td><td>(생략)</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추가>
</td>
<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내역</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이상</td><td>(생략)</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1 참조)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이상</td></tr>
<tr><td>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50% 이하</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
</td>
<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이상</td></tr>
<tr><td>하나 UBS 인 Best 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
하나 UBS 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td><td>50% 이하</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2 참조)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
</tr>
</table>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별첨1>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 제외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별첨 2>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보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10월 2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39 조(보수)	③(생략)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A-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5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A-U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8.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③(생략, 현행과 동일)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42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A-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2.71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A-U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8.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1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4.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2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3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8.5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4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5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F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1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4.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2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3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8.5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4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5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F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3">요약정보</td><td>
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td></tr>
</table>
</td><td>
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 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
</table>
</td></tr>
<tr><td>
투자비용

(생략)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
<tr><td>(A)</td><td>납입금액의 1.0% 이내</td><td>1.448</td><td>0.700</td></tr>
<tr><td>(C1)</td><td>없음</td><td>2.148</td><td>1.400</td></tr>
<tr><td>(A-E)</td><td>납입금액의 0.5% 이내</td><td>1.098</td><td>0.350</td></tr>
<tr><td>(C-E)</td><td>없음</td><td>1.248</td><td>0.500</td></tr>
</table>
</td><td>
투자비용

(업데이트)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
<tr><td>(A)</td><td>납입금액의 1.0% 이내</td><td>1.287</td><td>0.542</td></tr>
<tr><td>(C1)</td><td>없음</td><td>2.145</td><td>1.400</td></tr>
<tr><td>(A-E)</td><td>납입금액의 0.5% 이내</td><td>1.016</td><td>0.271</td></tr>
<tr><td>(C-E)</td><td>없음</td><td>1.245</td><td>0.500</td></tr>
</table>
</td></tr>
<tr><td>운용전문인력
책임 : 김정표</td><td>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왕섭</td></tr>
</table>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년 10월 22일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정표 → 이왕섭)
- 보수 변경</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김정표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생략)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table></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왕섭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업데이트)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d>(생략)</td></tr></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추가></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1 참조)</td></tr>
</table>

<table>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
</td>
<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2 참조)
</td>
</tr>
<tr>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td>
<td>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3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생략)
</td>
<td>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3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업데이트)
</td>
</tr>
<tr>
<td>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
<td>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td>
<td>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td>
</tr>
</table>

[투자설명서 별첨1]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매매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 제외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투자설명서 별첨2]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설명서 별첨3]

<변경 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700	0.700	0.030	0.018	**1.448**	실비	**1.448**	1.39	실비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700	0.350	0.030	0.018	**1.098**	실비	**1.098**	1.01	실비
A-U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	0.700	0.800	0.030	0.018	**1.548**	0.002	**1.550**	-	0.216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1.400	0.030	0.018	**2.148**	실비	**2.148**	1.59	실비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1.000	0.030	0.018	**1.748**	실비	**1.748**	-	실비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0.850	0.030	0.018	**1.598**	실비	**1.598**	-	실비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0.750	0.030	0.018	**1.498**	실비	**1.498**	-	실비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700	0.500	0.030	0.018	**1.248**	실비	**1.248**	1.22	실비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0.700	0.030	0.030	0.018	**0.778**	실비	**0.778**	-	실비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경 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700	0.542	0.030	0.015	**1.287**	실비	**1.287**	1.38	실비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700	0.271	0.030	0.015	**1.016**	실비	**1.016**	1.00	실비
A-U	수수료선취-	0.700	0.800	0.030	0.015	**1.545**	0.002	**1.547**	-	0.216

	오프라인-전환가능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1.400	0.030	0.015	**2.145**	실비	**2.145**	1.59	실비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1.000	0.030	0.015	**1.745**	실비	**1.745**	-	실비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0.850	0.030	0.015	**1.595**	실비	**1.595**	-	실비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0.750	0.030	0.015	**1.495**	실비	**1.495**	-	실비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700	0.500	0.030	0.015	**1.245**	실비	**1.245**	1.21	실비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0.700	0.030	0.030	0.015	**0.775**	실비	**0.775**	-	실비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인Best연금저축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10월 2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및 전략

<table>
<tr>
<td></td>
<td>[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td></tr>
</table>
투자비용
(생략)
운용전문인력
책임 : 김정표</td>
<td>[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
</table>
투자비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왕섭</td>
</tr>
</table>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
<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년 10월 22일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정표 → 이왕섭)</td>
</tr>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정표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생략)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모자형 구조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
</table></td>
<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왕섭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업데이트)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모자형 구조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
</table></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able></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able></td>
</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d>(생략)</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추가>
</td><td>
<table>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1 참조)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
</td><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2 참조)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td></tr>
<tr><td>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able>

<별첨1>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매매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 제외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별첨2>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보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10월 2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으로 한다.
제 39 조(보수)	③(생략)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42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1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5.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2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③(생략, 현행과 동일)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42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1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2.5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2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3.7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3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2.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4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1.2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5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374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1.2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3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4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8.7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5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5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E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3">요약정보</td><td>
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td></tr>
</table>
</td><td>
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 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
</table>
</td></tr>
<tr><td>
투자비용

(생략)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
<tr><td>(A)</td><td>납입금액의 1.0% 이내</td><td>1.4954</td><td>0.7374</td></tr>
<tr><td>(C1)</td><td>없음</td><td>2.2580</td><td>1.5000</td></tr>
<tr><td>(C-E)</td><td>없음</td><td>1.4954</td><td>0.7374</td></tr>
</table>
</td><td>
투자비용

(업데이트)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
<tr><td>(A)</td><td>납입금액의 1.0% 이내</td><td>1.287</td><td>0.542</td></tr>
<tr><td>(C1)</td><td>없음</td><td>1.995</td><td>1.250</td></tr>
<tr><td>(C-E)</td><td>없음</td><td>1.245</td><td>0.500</td></tr>
</table>
</td></tr>
<tr><td>운용전문인력
책임 : 김정표</td><td>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왕섭</td></tr>
</table>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년 10월 22일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정표 → 이왕섭) - 보수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정표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왕섭

<table>
<tr>
<td></td>
<td>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생략)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td></tr></table></td>
<td>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업데이트)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r></table>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table></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d>(생략)</td></tr></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추가></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이상</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1 참조)</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집합투자기구]
<추가></td>
<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2 참조)</td>
</tr>
<tr>
<td>13. 보수</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td>
</tr>
</table>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3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3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별첨1>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 제외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별첨2>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별첨3>

[변경 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7000	0.7374	0.0400	0.0180	**1.4954**	0.0000	**1.4954**	1.39	0.2564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0	1.5000	0.0400	0.0180	**2.2580**	실비	**2.2580**	1.59	실비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0	1.3750	0.0400	0.0180	**2.1330**	실비	**2.1330**	-	실비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0	1.2500	0.0400	0.0180	**2.0080**	실비	**2.0080**	-	실비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0	1.1250	0.0400	0.0180	**1.8830**	실비	**1.8830**	-	실비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0	1.0000	0.0400	0.0180	**1.7580**	0.0032	**1.7612**	-	0.2385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7000	0.7374	0.0400	0.0180	**1.4954**	0.0000	**1.4954**	1.22	0.2564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경 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700	0.542	0.030	0.015	**1.287**	0.000	**1.287**	1.38	0.256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1.250	0.030	0.015	**1.995**	실비	**1.995**	1.59	실비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1.125	0.030	0.015	**1.870**	실비	**1.870**	-	실비
C3	수수료미징구-	0.700	1.000	0.030	0.015	**1.745**	실비	**1.745**	-	실비

	오프라인-보수 체감									
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0.700	0.875	0.030	0.015	**1.620**	실비	**1.620**	-	실비
C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0.700	0.750	0.030	0.015	**1.495**	0.003	**1.498**	-	0.239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700	0.500	0.030	0.015	**1.245**	0.000	**1.245**	1.21	0.256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꿈나무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보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10월 2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2. 아이비리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수준	2. 아이비리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수준
제 39 조(보수)	③(생략)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42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1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1.42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③(생략, 현행과 동일)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42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1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7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2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71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3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	[종류 C2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3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9.3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3">요약정보</td><td>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td></tr>
</table></td><td>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
<tr><th>모투자신탁 명칭</th><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 모투자신탁[주식]</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
</table></td></tr>
<tr><td>투자비용
(생략)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
<tr><td>(A)</td><td>납입금액의 0.6%이내</td><td>1.350</td><td>0.542</td></tr>
<tr><td>(C1)</td><td>없음</td><td>1.950</td><td>1.142</td></tr>
</table></td><td>투자비용
(업데이트)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
<tr><td>(A)</td><td>납입금액의 0.6%이내</td><td>1.287</td><td>0.542</td></tr>
<tr><td>(C1)</td><td>없음</td><td>1.815</td><td>1.070</td></tr>
</table></td></tr>
<tr><td>운용전문인력
책임 : 김정표</td><td>운용전문인력
책임 : 이왕섭</td></tr>
</table>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추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

<table>
<tr><td>관한 사항</td><td></td><td>[주식] (CV203)</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td><td>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년 10월 22일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정표 → 이왕섭)
- 보수 변경</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김정표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생략)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able>
<추가></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왕섭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업데이트)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able>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1 참조)</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d>(생략)</td></tr></table></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d>(생략, 현행과 동일)</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나. 모집합투자기구
<추가></td><td><table><tr><td>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td><td></td></tr></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2 참조)</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able>[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50% 수준</td></tr></table>[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 3 참조)</td></tr>
<tr><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4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생략)</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4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업데이트)</td></tr>
<tr><td>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able>

<별첨1>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별첨2>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 제외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별첨 3>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별첨4>

[변경 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75	0.542	0.040	0.018	**1.350**	0.002	**1.352**	1.39	0.428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5	1.142	0.040	0.018	**1.950**	0.000	**1.950**	1.59	0.401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5	1.071	0.040	0.018	**1.879**	0.000	**1.879**	-	0.418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5	1.000	0.040	0.018	**1.808**	0.002	**1.810**	-	0.431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경 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700	0.542	0.030	0.015	**1.287**	0.002	**1.289**	1.38	0.428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1.070	0.030	0.015	**1.815**	0.000	**1.815**	1.59	0.401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1.000	0.030	0.015	**1.745**	0.000	**1.745**	-	0.418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0.700	0.930	0.030	0.015	**1.675**	0.002	**1.677**	-	0.431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태극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모투자신탁 추가

2) 보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10월 2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3. 아이비리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수준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3. 아이비리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제 39 조(보수)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32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32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 분의 0.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 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2">[요약정보]</td><td>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추가></td><td>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tr><td>모투자신탁 명칭</td><td>하나UBS대한민국1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r><tr><td>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td></tr></table></td></tr>
<tr><td>투자비용
(생략)
<table><tr><th>클래스 종류</th><th>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table></td><td>투자비용
(업데이트)
<table><tr><th>클래스 종류</th><th>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table></td></tr>
</table>

	<table><tr><th></th><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tr><td>(C)</td><td>없음</td><td>1.7906</td><td>1.0000</td></tr></table>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생략)	<table><tr><th></th><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tr><td>(C)</td><td>없음</td><td>1.745</td><td>1.000</td></tr></table>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생략)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추가>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CV20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 년 10 월 22 일 - 모투자신탁(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추가 - 보수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table>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table> <table><tr><th>모투자신탁</th><th>주요 투자대상 및 전</th></tr></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h colspan="2">명</th><th>략</th></tr>
<tr><td rowspan="3">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주요 투자 대상</td><td>국내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td></tr>
<tr><td>투자 목적</td><td>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td></tr>
<tr><td>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td><td>(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 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able>
</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 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d>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재산의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td>
<td>
<table>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rowspan="2">30% 수준</td><td>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재산의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생략)
</td>
<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대한민국1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별첨 1 참조>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2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td>
<td>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2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td>
</tr>
</table>

	예시표(단위: 1,000 원) (생략)	예시표(단위: 1,000 원)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투자설명서 별첨1]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투자설명서 별첨2]

<변경 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7326	1.0000	0.0400	0.0180	1.7906	0.0024	1.7930	1.59	0.3532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7326	0.3500	0.0400	0.0180	1.1406	0.0000	1.1406	-	0.0000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경 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7000	1.0000	0.0300	0.0150	1.7450	0.0024	1.7474	1.59	0.3532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7000	0.3500	0.0300	0.0150	1.0950	0.0000	1.0950	-	0.0000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태극감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모투자신탁 추가

2) 보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10월 2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가. 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수준(수준이라 함은 ±10%p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아이비리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수준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가. 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수준(수준이라 함은 ±10%p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아이비리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수준
제 39 조(보수)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32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32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 분의 0.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 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추가>	**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명칭 : 하나UBS대한민국1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신탁의 투자목적</td><td>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td></tr>
</table>
</td></tr>
<tr><td></td><td>
투자비용
(생략)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
<tr><td>(C)</td><td>없음</td><td>1.7906</td><td>1.0000</td></tr>
</table>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생략)
</td><td>
투자비용
(업데이트)
<table>
<tr><th rowspan="2">클래스 종류</th><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
<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
<tr><td>(C)</td><td>없음</td><td>1.745</td><td>1.000</td></tr>
</table>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td></tr>
<tr><td></td><td>운용전문인력
(생략)</td><td>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able>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추가>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CV20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 년 10 월 22 일 - 모투자신탁 (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추가 - 보수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table>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60% 수준</td></tr>
</table>

<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td><td></td><td>과수익 기회의 확대</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60% 수준</td><td>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재산의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rowspan="2">60% 수준</td><td>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재산의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able>
</td><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table><tr><td>하나UBS 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40% 수준</td></tr><tr><td>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60% 수준</td></tr></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생략)</td><td><table><tr><td>하나UBS 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40% 수준</td></tr><tr><td>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대한민국1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60% 수준</td></tr></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별첨 1 참조></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2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생략)</td><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2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업데이트)</td></tr>
<tr><td>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tr>
</table>

[투자설명서 별첨1]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투자설명서 별첨2]

<변경 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7326	1.0000	0.0400	0.0180	1.7906	0.0024	1.7930	1.59	0.4050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7326	0.3500	0.0400	0.0180	1.1406	0.0000	1.1406	-	0.0000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경 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7000	1.0000	0.0300	0.0150	1.7450	0.0024	1.7474	1.59	0.4050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7000	0.3500	0.0300	0.0150	1.0950	0.0000	1.0950	-	0.0000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태극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1) 모투자신탁 추가

2) 보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10월 2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4. 아이비리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수준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4. 아이비리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수준
제 39 조(보수)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32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32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S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제 39 조의 2(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 분의 0.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한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 보수중 50%(연 1000 분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 rowspan="2">[요약정보]</td><td>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추가></td><td>투자목적 및 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table><tr><td>모투자신탁 명칭</td><td>하나UBS대한민국1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r><tr><td>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td></tr></table></td></tr>
<tr><td>투자비용
(생략)
<table><tr><th>클래스</th><th>투자자가 부담하는</th></tr></table></td><td>투자비용
(업데이트)
<table><tr><th>클래스</th><th>투자자가 부담하는</th></tr></table></td></tr>
</table>

	<table><tr><th rowspan="2">종류</th><th colspan="3">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tr><td>(C)</td><td>없음</td><td>1.7906</td><td>1.0000</td></tr></table>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생략)	<table><tr><th rowspan="2">종류</th><th colspan="3">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tr><tr><th>판매 수수료</th><th>총 보수</th><th>판매 보수</th></tr><tr><td>(C)</td><td>없음</td><td>1.745</td><td>1.000</td></tr></table>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생략)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추가>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CV20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 년 10 월 22 일 - 모투자신탁 (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추가 - 보수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table>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10% 수준</td></tr>
</table>

<추가>
</td>
<td>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모자형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
<tr><td>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대한민국1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10% 수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모투자신탁명</th><th>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
<tr><td rowspan="3">하나UBS대한민국1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주요 투자 대상</td><td>국내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td></tr>
<tr><td>투자 목적</td><td>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td></tr>
<tr><td>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td><td>(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td><td></td><td>-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 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td></tr>
</table>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10% 수준</td><td>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td><td>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 rowspan="2">10% 수준</td><td>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td></tr>
<tr><td>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td></tr>
</table>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th></tr>
</table>
</td><td>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th></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td>
<td>
<table>
<tr><th></th><th>율</th></tr>
<tr><td>하나UBS 그레이터코리아증권 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r><td>하나UBS 태극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r><td>하나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r><td>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10% 수준</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생략)
</td>
<td>
<table>
<tr><th></th><th>율</th></tr>
<tr><td>하나UBS 그레이터코리아증권 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r><td>하나UBS 태극블루칩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r><td>하나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30% 수준</td></tr>
<tr><td>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대한민국1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10% 수준</td></tr>
</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별첨 1 참조>
</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2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생략)</td>
<td>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2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업데이트)</td>
</tr>
<tr>
<td>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td>
<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td>
<td>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td>
</tr>
</table>

[투자설명서 별첨1]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 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투자설명서 별첨2]

<변경 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7326	1.0000	0.0400	0.0180	1.7906	0.0027	1.7933	1.59	1.0000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7326	0.3500	0.0400	0.0180	1.1406	0.0000	1.1406	-	0.3500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경 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 주4)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7000	1.0000	0.0300	0.0150	1.7450	0.0027	1.7477	1.59	0.2761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0.7000	0.3500	0.0300	0.0150	1.0950	0.0000	1.0950	-	0.0000
지급시기		3 개월 후급, 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